

평결 판단에서 웰스효과와 확인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의 영향*

석 동 현[†]

김 미 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는 미국의 민사 모의배심 상황에서 발견된 웰스효과(Wells effect, Niedermeier, Kerr & Messé, 1999; 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사건의 책임이 있을 주관적 확률을 높게 추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평결 내리기를 주저하는 현상)가 우리나라의 민사 모의배심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반복 검증하고, 이 효과에 대한 새로운 설명기제의 하나로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의 적절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먼저, 실험 1에서는 Wells(1992)의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조건별 시나리오들인 ‘타이어자국’ 조건 시나리오와 ‘타이어자국-민음’ 조건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대학생 46명에게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 모의배심원들은 두 조건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높게 추정하였으나,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에 비해 타이어자국 조건에서 유죄 평결을 현저히 주저하였다. 이 결과는 실험 1이 한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웰스효과를 반복 검증하였음을 의미한다. 실험 2는 웰스효과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설명을 제안하고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 1에서 사용한 ‘타이어자국’ 조건의 시나리오에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높거나 낮게 조작하는 문구를 추가한 두 시나리오를 만들어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험 2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거나 높게 조작된 조건 간에 유죄의 주관적 확률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유죄평결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 2의 결과는 오판으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될 피해의 크기를 배심원들이 작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크게 지각하는 경우에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 내리기를 꺼려하는 웰스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주요어 : 웰스효과, 평결 판단,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 이 논문은 김미진의 2013년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석동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E-mail : sdh@daegu.ac.kr

McCauliff(1982)는 171명의 미연방판사들에게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 합리적·논리적 생각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심)’ 즉, 그 이상이면 피고가 유죄 평결을 받게 될 수 있는 식역(threshold)의 수리적인 정의를 물었더니, 판사들이 제공한 식역의 중앙치는 90%였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약 90%이상 피고가 유죄라고 판단되면 판사 또는 배심원이 유죄평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사 재판 중에서 사건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두 당사자 중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거우위의 결정 규칙(preponderance of evidence decision rule)’을 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식역은 보통 ‘50% 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이러한 형태의 민사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의 책임에 대한 증거의 무게가 50보다 더 무겁다면(예. 51:49), 소송 당사자들 중 증거의 무게가 더 무거운 당사자에게 판사 또는 배심원이 더 큰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Arkes, Shoots-Reinhard, Mayes, 2012, p.276에서 재인용).

심리학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배심원 의사 결정 모형은 주관적 확률-식역 모형(subjective probability-threshold model)을 토대로 하는데(Wells, 1992), 앞서 형사와 민사 재판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이 모형은 피고가 책임이 있다고 배심원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된 확률이 최소한의 식역확률(threshold probability)을 넘어서면(즉, 형사재판에서는 90%이상, 민사재판에서는 50%이상) 배심원은 이에 맞추어 피고를 유죄 또는 더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결정하게 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즉,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유죄 평결이 일관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Arkes 등, 2012).

그러나 Wells(1992)는 사람들이 통계적 증거를 통해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을 상당히 높이 지각하면서도 피고에게 유죄 평결 내리기를 주저하는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이 확률-식역 모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웰스효과

Wells(1992)의 실험에서 모의배심원에게 제시된 민사사건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인 어떤 여성(“Prob 여사”)이 자신의 개를 죽인 혐의로 “파란버스회사”를 고소했다. Prob 여사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급하게 커브를 돌던 버스가 개를 치어 죽였다. Prob 여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오직 2개의 버스 회사(파란버스회사와 회색버스회사)가 존재하는데, 두 버스 회사 모두는 승객들이 모두 내린 빈 버스를 각 회사의 버스 터미널로 회송시키기 위해 Prob 여사와 개가 함께 산책하던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Prob 여사는 색맹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를 죽인 버스의 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도시 교통 공무원은 개를 죽인 버스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타이어자국 증거를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한 버스 10대 모두의 타이어자국 그리고 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한 버스 10대 모두의 타이어자국과 비교하였다고 진술했다. 그 결과, 현장에 있던 타이어자국 증거는 파란버스회사의 버스들과 80% 일치했으며, 회색버스회사의 버스들과는 20% 일치했다고 진술했다.

Wells(1992)는 이 시나리오를 ‘타이어자국 조건(tire-tracks version)’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나

리오를 읽은 모의배심원들은 파란버스회사의 버스가 Prob 여사의 개를 죽였을 확률, 즉 주관적 확률을 판단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결과, 모의배심원의 대부분은 파란버스회사의 버스가 Prob 여사의 개를 죽였을 확률을 약 70%라고 응답하였다(대부분의 모의배심원들은 80% 정도로 응답했지만, 몇몇 모의배심원들이 50%로 응답했고, 이에 따라 주관적 확률의 평균이 약 70%로 감소됨).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사 재판 중에서 사건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두 당사자 중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들 중 한 쪽 당사자의 증거의 무게가 50% 이상이라면 그 당사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Wells(1992)의 모의배심원들 또한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따라서 파란버스회사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내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파란버스와 회색버스 중 하나가 개를 죽였고, 대부분의 모의배심원이 파란버스가 개를 죽였을 가능성을 약 70%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의배심원 중 대부분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험 결과는 모의배심원 중 약 20%만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모의배심원들은 파란버스가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주관적 확률을 높게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 증거만을 토대로 피고에게 유죄 평결 내리기를 주저하였다.

반면에, Wells(1992)가 사용한 또 다른 시나리오 조건인 ‘타이어자국-밟음(tire-tracks-belief) 조건’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할 도시 교통 공무원이 사건 현장에 있던 타이어 자국을 수거

한 후, 정확성이 80%정도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한 10대의 버스 그리고 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한 10대의 버스와 비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그는 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파란버스가 Prob 여사의 개를 죽였을 것이라 믿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은 타이어자국 조건과 마찬가지로 파란버스회사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약 70%로 보고했으나(타이어자국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서도 몇몇 모의배심원들이 확률을 약간 낮추어 보고했기 때문에, 80%가 아니라 약 70%로 약간의 감소가 있었음), 실제 유죄 평결에서는 타이어자국 조건의 모의배심원과 달리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70%에 가까운 유죄 평결을 보여주었다. 즉, 파란버스가 개를 죽였을 확률 판단에서는 두 조건이 약 70%로 유사했으나, 실제 유죄 평결에서는 그 비율이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타이어자국 조건의 20% 대 타이어자국-밟음 조건의 70%).

이처럼 Wells(1992)는 민사소송의 모의배심 상황에서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은 거의 비슷하게 지각하였으나(약 70%), 유죄 평결 비율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20% 대 70%)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Niedermeier, Kerr, & Messé (1999)는 이 현상에 첫 발견자인 Wells의 이름을 붙여 ‘웰스효과(Wells effect)’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설명기제를 탐색하였다. 이 효과에 대해 특기할만한 점은, 의사결정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사람들이 종종 확률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 왔지만(예. Kahneman & Tversky, 1972; Saks & Kidd, 1980), 이 웰스효과는 배심원들이 통계적 또는 확률적 증거를 정확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결할 때 이 증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흥미로운 효과에 대한 설명기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Arkes 등(2012), Niedermeier 등(1999), Sykes & Johnson(1999) 그리고 Wells(1992) 자신의 연구에서 제안된 몇몇 설명기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웰스효과와 설명

‘사실 대 증거’ 추론

Wells(1992)는 이와 같은 주관적 확률과 평결간의 현저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실 대 증거’ 추론(*fact-to-evidence reasoning*)을 제안했는데, 이 설명은 누가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지에 관계없이(즉, 어떤 버스가 정말로 개를 치어 죽였는지에 상관없이) 증거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증거는 비진단적(*nondiagnostic*) 즉, 정보적이지 않게 여겨지고 이에 따라 배심원의 숙의와 최종 평결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Niedermeier 등, 1999, p.534에서 재인용).

예를 들면, 타이어자국 조건의 증거(*evidence*)는 사건 현장의 타이어자국이 파란버스들의 80%와 일치하고 회색버스들의 20%와 일치한다는 것인데, 이 증거는 어떤 버스가 실제로 개를 죽였는지에 상관없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파란버스와 회색버스 중 어느 버스가 범인이어도 이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는 평결 판단에 유익한 정보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평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반면에, 타이어자국-밌음 조건의 증거는 ‘80% 신뢰로운 검사를 통해 증인인 도시 교통 공무원이 파란버스회사의 버스가 개를 죽였다는 것을 믿는다’고

제시되었다. 파란버스가 실제로 개를 죽였다면 증인은 옳을 것이지만, 실제로 개를 친 버스가 회색버스라면 그는 옳지 않을 것이다. 이 조건에서, 어떤 버스가 실제로 개를 죽였는지(*the fact*)는 증인의 증언(*the evidence*)의 타당도와 관련된다. 증인의 증언은 파란버스가 개를 죽였을 때만 사실이기 때문에, Wells(1992)는 이 증거가 평결 판단에 유익한 정보로 여겨지게 되고 이에 따라 평결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추론했다(Niedermeier 등, 1999, p.534에서 재인용).

비록 이 설명이 Wells(1992) 자신의 실험 결과들을 잘 설명하기는 했지만, 추후에 이 설명의 적절성을 검토한 Niedermeier 등(1999)은 이 논리추론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여 실험참가자들이 이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 과정을 모의배심원들이 실제 평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Niedermeier 등(1999)이 실시한 다른 설명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이 ‘사실 대 증거’ 추론 설명은 설명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인간 요인 가설과 일반적 결론 가설

Niedermeier 등(1999)은 Wells(1992)가 그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들을 다른 사람들의 신념들에 기초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p.750)’라고 언급한 것을 응용하여, 웰스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 요인 가설(*human factor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Niedermeier 등(1999)은 Wells(1992)가 사용했던 실험조건들 중 파란버스회사의 유죄평결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모든 조건들에서, 증인(“다른 사람”)이 파란버스 회사의 버스가 Prob 여사의

개를 치어 죽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에서 증인(도시 교통 공무원)은 사고 현장의 타이어자국을 파란버스들 그리고 회색버스들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파란버스가 Prob 여사의 개를 죽였다고 믿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 조건의 모의배심원 중 60% 이상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반면에 ‘타이어자국’ 조건에서는 배심원과 이러한 결론을 공유하는 증인의 진술은 없었고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파란버스회사의 유죄 쪽으로 평결하기를 주저했다(실제로 약 10%만 유죄평결을 내림). 이 차이는 다른 형태의 증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other people’s opinions)을 더 비중있게 보는 경향으로부터 나온 결과일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일단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배심원들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Niedermeier 등(1999)은 ‘인간 요인 가설’과 유사하지만, 결론을 내리는 주체가 반드시 인간일 필요는 없다는 데에 주목하여 ‘일반적 결론 가설(general conclusion hypothesis)’을 제안했다. 즉, 사건에 포함된 어떤 정보원(예. 인간 또는 컴퓨터)이 확정적인 판단을 했다는 정보는 배심원들에게 그들 자신의 결정에 대한 더 강한 기초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를 평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그 정보원이 내리는 결론과 같은 방향으로 의사결정하기 쉽게 해 주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인간 결론 가설과 일반적 결론 가설의 차이는 인간 결론 가설이 결론을 내리는 주체가 사람이어야 한다고 제한하는 반면에, 일반적 결론 가설은 사람을 포함한 어떤

것이 주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평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Niedermeier 등(1999, 실험 1)은 세 조건을 비교하였는데, 첫 조건인 타이어자국 조건은 통계적인 증거만 제시될 뿐 인간이나 어떤 다른 주체에 의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조건이고, 둘째 조건인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증인이 타이어자국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며, 세 번째 조건에서는 이러한 타이어자국 비교를 통한 사건에 대한 결론을 컴퓨터가 제시함으로써 인간 이외의 주체에 의한 결론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연구자들은 이 세 번째 조건을 ‘비인간 결론 조건’이라고 불렀다)을 만들어 각 조건을 비교하였다.

정리하면, 연구자들은 1) 타이어 자국 조건, 2)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인간 결론 조건), 그리고 3) 컴퓨터가 제시한 결론 조건(비인간 결론 조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 이 조건들에서 피고가 개를 죽였을 주관적 확률 판단과 유·무죄 평결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관적 확률은 세 조건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각각 73%, 75%, 78%), 유죄를 결정한 비율은 타이어 자국 조건보다 인간 결론 조건과 비인간 결론 조건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각각 30%, 60%, 54%), 인간 결론 조건과 비인간 결론 조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첫째, 인간 결론 조건과 비인간 결론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인간 요인 가설’이 지지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웰스효과가 경감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결론이 없

는 조건(타이어자국 조건)과 결론이 있는 조건(인간 결론 조건과 비인간 결론 조건을 통합한 조건)을 비교한 결과, 결론이 없는 조건의 유죄 평결 비율(30%)이 결론이 있는 두 조건을 통합한 집단(57%)보다 유의하게 낮아서, 일반적 결론 가설이 웰스효과에 대해 적절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사 용이성

Niedermeier 등(1999)은 일반적 결론 가설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설명을 찾기 위하여, Wells(1992)가 그의 연구의 논의에서 언급했던 설명기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Wells(1992)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피고가 유죄가 아니라는 증거(즉, 실제로 개를 죽인 버스는 회색버스이다)들 중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더 쉬운지에 따라서 증거의 설득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p.750).’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발전시켜서, Niedermeier 등(1999)은 피고(파란버스)가 무죄라고 모사(simulation)하기 쉬울수록 배심원들은 피고에 대한 유죄 결정을 적게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모사 용이성 가설(ease of simulation hypothesis)’이라고 명명하였다.

Niedermeier 등(1999, 실험 2)은 ‘모사 용이성’ 가설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이어 자국 ‘완전 일치’ 조건과 ‘부분 일치’ 조건을 만들어서 비교하였다. 회색버스가 개를 죽였다고 모사하기 더 쉬운 완전 일치 조건은 타이어 일치(tire matching) 기술이 파란버스회사의 전체 버스 10대들 중 8대와 그리고 회색버스회사의 전체 버스 10대들 중 2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타이어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모의배심원들은 사고 현장의 타이어자국이 최소한 하나의 회색버

스와 명백한, 확정적인 그리고 완전한 일치가 있을 때 회색버스가 개를 죽였을 시나리오를 모사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 완전 일치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은 회색버스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더 쉬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 파란버스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기 더 어려웠다.

반면에 부분일치 조건에서, 증거는 타이어 자국들을 비교하여 부분 일치율을 제시하는 일치 기술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 부분일치 조건에서는 현장에서 수거한 자국이 파란버스 1대 그리고 회색버스 1대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부분 일치율은 파란버스에 대해 80%, 회색버스에 대해 20%라는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은(최소한 하나의 회색버스와 명백한, 확정적인 그리고 완전한 일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색버스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모사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따라 피고인 파란버스회사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었다.

실험결과, 모의배심원은 부분 일치 조건보다 완전 일치 조건에서 회색버스가 개를 죽였다고 더 쉽게 모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완전 일치 조건보다 부분 일치 조건에서 파란버스에 대해 더 많은 유죄결정을 내렸다(25% 대 47%). 즉, 회색버스가 개를 죽였다고 모사하기 쉬울수록 피고인 파란버스회사에게 유죄결정을 적게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모사 용이성 설명은 Niedermeier 등(1999)의 연구에서 가장 일관된 지지를 받았으나, 주관적 확률이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매개분석에서 모사 용이성은 평결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확률과 평결의 관계에서 모사

용이성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웰스효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사람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들이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물론, 필요한 정보들이 부족할 때에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필요한 정보들이 부족한 의사결정상황은 의사결정자가 느끼는 불확실성(uncertainty)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배심원제 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결은 필연적으로 여러 증거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배심원들이 하도록 요구하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심각한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잘못된 평결이 선량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높여, 상당히 높은 주관적 확률 지각에도 불구하고 평결을 주저하는 웰스효과와 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Wells(1992)가 사용한 시나리오에서도 모의 배심원은 파란버스회사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고 회색버스회사가 책임이 있을 20%의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 자신의 판단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판단 오류로 인해 피고가 받게 될 피해 또는 부정적 결과가 막대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모의배심원은 파란버스회사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높게 지각하면서도, 자신의 판단 오류로

인해 피고가 받게 될 피해크기나 부정적인 결과가 크다고 지각하면 할수록 유죄 평결을 더욱 꺼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잘못된 평결 판단을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risk)을 높게 지각할수록, 유죄의 주관적 확률을 높게 판단하더라도 유죄평결은 주저하게 되는 웰스효과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앞서 살펴본 웰스효과와 설명기제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 가설을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우선 웰스효과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확인되는 현상인지를 알아보았고, 실험 2에서는 필자들이 제안한 새로운 설명인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웰스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 1

실험 1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모의 민사배심 상황에서도, 통계적 증거를 통해 배심원들이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을 높게 판단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주저하는지, 즉 웰스효과가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

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양형(형량)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 결과들을 토대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 확대 실시되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당시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사건, 뇌물이나 국고 손실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사건, 특수 강간 등과 같은 강력사건과 중죄사건으로 제한하였고, 그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토대로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대상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서울신문, 2011, 9, 27; 한국일보, 2012, 2, 1).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지만(예, 살인, 강간), 민사사건은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주위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겪을 수 있는 계약이나 손해배상,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민사사건은 국가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입증 책임도 검사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비해서 배심원들이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이 민사 사건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의

가치관과 상식이 반영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 불신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제의 민사재판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 수원, 춘천 지방법원 등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모의배심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 9, 15).

배심원제도의 역사가 긴 서구에서는 배심원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심원제도의 특성을 포함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상태여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점차 민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 의사결정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실험 1에서는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모의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에 따라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을 높게 지각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주저하는지, 즉 웰스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험 1에서는 Niedermeier 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타이어자국 조건과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의 시나리오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웰스효과를 반복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타이어자국 조건과 타이어자국-민음 조건 간에 유죄의 주관적 확률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유죄평결 비율은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이 타이어자국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웰스효과의 반복검증 가설).

방 법

참가자 및 실험설계

46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두 시나리오 조건 (타이어자국 조건과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고,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부정확하게 응답한 모의배심원 17명을 제외하고 총 29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분석 대상자 중에는 남성(9명, 31.03%)보다 여성(20명, 68.97%)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모두 20대였다.

절차

대학생들은 타이어자국 조건과 타이어자국-민음 조건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무선적으로 제공받았는데, 이 시나리오의 맨 앞장에는, 민사소송에서 맡게 될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주의사항(예. 증거 입증의 기준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른 점을 비교하여 설명)과 민사소송의 증거 입증 기준인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었다. 모의배심원이 된 대학생들은 이 설명을 꼼꼼히 읽은 뒤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지시받았으며, 시나리오 내용을 읽기 전에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그 후, 모의배심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판단했으며 유무죄를 평결하였다. 주관적 확률과 유무죄 평결에 대한 질문들은 제시순서에 따른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였다.

시나리오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Niedermeier

등(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한글로 번역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각색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과 대상을 변경하였는데, ‘Prob 여사’는 성별이 중립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최지수’로 변경하였으며, 개의 경우 동물 애호에 대한 문화차이 및 개인적 태도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대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 중 하나인 ‘노트북’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이를 4명의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 및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쉬운 문구로 수정하여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 실험 1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타이어자국(tire-tracks) 조건:

이 조건에서는 현장에서 수집한 타이어자국을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한 전체 10대의 버스들, 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한 전체 10대의 버스들 모두와 비교한 결과, 파란버스들과 80%, 회색버스들과 20% 일치한다는 정보가 제공된다. 자세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인 최지수 씨는 자신의 노트북을 파손한 파란버스회사를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음의 증거가 제시되었다:

최지수 씨는 2012년 7월 6일 오전 11시 40분경 〇〇시 〇〇읍 국도 옆의 좁은 인도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큰 차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최지수 씨가 뒤돌아봤을 때 한 버스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최지수 씨의 노트북 가방을 쳐서 떨어뜨림과

동시에, 떨어진 노트북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버스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렸다. 최지수 씨는 인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안타깝게도, 최지수 씨는 색맹이기 때문에 버스의 색깔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 증인인 도로 교통 공무원 김철수 씨가 법정에 서서 증인 선서를 했고, 이 지역에는 오직 2개의 버스 회사(즉, 파란버스회사와 회색버스회사)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각각의 회사는 버스 승객들을 모두 내려준 뒤에 차고지로 빈 버스를 회송하기 위하여 그 길을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 두 버스 회사들 중 한 회사는 최지수 씨의 노트북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두 번째 증인인 도로 교통 공단의 선임 사고 조사관인 이영수 씨가 법정에 섰으며, 증인 선서를 하였다. 이영수 씨는 파손된 노트북 가방에 있던 타이어 자국을 종이 위에 분을 떠서 옮겼고, 이 분을 뜬 타이어 자국을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총 10대의 버스들 중 10대 모두, 그리고 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총 10대의 버스들 중 10대 모두의 타이어 자국들과 비교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본 뜬 타이어 자국은 파란버스회사 버스들의 타이어 자국과 80%가 일치했으며, 회색버스회사 버스들의 타이어 자국과는 20%만 일치했다고 증언하였다.

최지수 씨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고

려할 때, 최지수 씨의 노트북을 파손한 책임이 파란버스회사에게 있으므로, 배심원들은 최지수 씨의 손해에 대해 파란버스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타이어자국-믿음(tire-tracks-belief) 조건

이 조건에서는, 정확도가 80%인 타이어 자국 비교 일치 기술에 따라서, 현장에서 수집된 타이어 자국이 파란버스 한 대와 일치하고 이에 따라 증인은 파란버스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는 진술을 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네 번째 문단 즉, 증인 이영수의 증언의 마지막 부분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이어자국(tire-tracks)’ 조건의 시나리오와 정확히 동일하다. 변경된 네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증인인 도로 교통 공단의 선임 사고 조사관인 이영수 씨가 법정에 섰으며, 증인 선서를 하였다. 이영수 씨는 파손된 노트북 가방에 있던 타이어 자국을 종이 위에 분을 떠서 옮겼고, 이 분을 뜬 타이어 자국을 파란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총 10대의 버스들 중 10대 모두, 그리고 회색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총 10대의 버스들 중 10대 모두의 타이어 자국들과 비교했다고 증언하였다. 타이어 자국을 비교하는 일치 기술을 사용하여 이영수 씨는 본 뜬 타이어 자국이 파란버스회사 버스들 중의 한 대와 일치한다고 증언하였다. 파란버스회사 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이영수 씨는 타이어 자국을 일치시키는 기술의 정확성은 80%이고, 오류 가능성은 20%라고 증언하였다. 이 기술을 근거로 하여, 이영수 씨는 최지수 씨의 노트

복을 파손시킨 버스는 파란버스회사의 버스라고 믿었다.

중속 측정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Niedermeier 등(1992)과 Arkes 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우위의 결정규칙’, ‘주관적 확률 판단’, 및 ‘유죄 평결’이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증거우위의 결정규칙

모의배심원이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Arkes 등(2012)이 사용한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하였다. 질문은 “다음은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보기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정답은 “민사소송에서, 50%가 넘는 증거가 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있을 때 유죄로 평결한다”인데, 이 문장내의 퍼센트를 변형하여(100%, 95%, 75%, 25%, 10%, 잘 모르겠다) 오답지를 작성했다.

주관적 확률 판단

피고(파란버스)가 사고를 일으켰을 주관적 확률 판단에 대한 질문은 “파란버스회사의 버스 중 한 대가 최지수 씨의 노트북을 파손했을 확률을 다음의 눈금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였고, 척도는 0%~100%까지였으며, 10% 점수 간격의 눈금 상에서 평정하였다.

유죄 평결

피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당신은 최지수 씨의 손해에 대해 파란버스회사의 유죄를 결정하시겠습니까?”였고, 참가자들은 ‘예’와 ‘아니오’ 중 하나에 답하였다.

결 과

주관적 확률 판단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파란버스회사의 버스가 노트북을 파손했을 확률의 평균은 타이어자국 조건에서 74.67%(SD=11.87),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에서는 73.57%(SD=14.47)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조건 간에 주관적 확률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확률은 두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7) = .22, ns$).

유죄평결 비율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죄를 결정한 모의배심원의 비율은 타이어자국 조건의 경우 40.00%, 타이어자국-민음 조건의 경우 78.57%로 나타났다. 두 시나리오 조건 간에 유무죄 평결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시나리오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chi^2(1, N=29)=4.44, p<.05$), 타이

표 1.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평결 결과(실험 1)

	타이어자국 조건(n=15)	타이어자국-민음 조건(n=14)
주관적 확률(%)	74.67	73.57
유죄평결(%)	40.00	78.57

표 2. 시나리오 조건에 따른 유무죄 평결

	타이어자국조건		타이어자국 -민음 조건		전 체	
	N	%	N	%	N	%
유죄 평결	6	40.00	11	78.57	17	58.62
무죄 평결	9	60.00	3	21.43	12	41.38
전 체	15		14		29	

$\chi^2 = 4.44^*$

* $p < .05$

타이어자국 믿음 조건보다 타이어자국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죄 평결을 유의하게 더 적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에 따라, 웰스효과가 반복검증되리라 예상했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부가적으로, 조건별로 주관적 확률과 유죄 평결 질문의 제시 순서에 따른 순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순서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자국 조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낮거나 높게 조작하여, 이 변인의 영향에 따른 웰스효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높은 조건 간에 유죄의 주관적 확률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유죄 평결 비율은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유의하게 낮을 것이다.

실험 2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잘못된 평결을 했을 때 발생할 위험성(risk)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잘못된 평결로 인해 피고가 받게 될 피해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유죄의 주관적 확률을 높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을 주저하는 웰스효과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이라고 명명하였다. 실험 2에서는 이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 2는 실험 1에서 사용했던

방 법

참가자 및 실험설계

70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거나 높은 두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고,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부정확하게 응답한 모의배심원 10명을 제외하고 총 60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분석 대상자 중에는 남성(13명, 21.67%)보다 여성(47명, 78.33%)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대부분 20대였지만, 대학 1학년생이 포함되어 만 18세

~19세 사이의 학생도 20%정도 참여하였다.

는 않을 것이다.

절차

실험 1과 유사하게, 대학생들은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게 조작된 조건과 높게 조작된 조건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무선적으로 제공받았는데, 이 시나리오의 맨 앞장에는, 민사소송에서 맡게 될 배심원 역할에 대한 주의사항과 민사소송의 증거 입증 기준의 하나인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었다. 모의배심원이 된 대학생들은 이 설명을 꼼꼼히 읽은 뒤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지시받았으며, 시나리오 내용을 읽기 전에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그 후, 모의배심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유무죄 평결을 하였다. 주관적 확률과 유무죄 평결에 대한 질문들은 제시순서에 따른 순서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역균형화하였다.

시나리오 내용

두 조건의 시나리오는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낮거나 높게 조작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문단을 시나리오의 마지막에 각 조건별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 1의 ‘타이어 자국(tire-tracks)’ 조건의 시나리오와 동일했다.

평결 오류 위험성 낮음 조건:

파손된 노트북이 저가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 유·무죄의 평결이 잘못될 경우에도 파란버스회사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는 입히지 않을 것이며, 안전운행을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지

평결 오류 위험성 높음 조건:

파손된 노트북이 고가의 최신형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 유·무죄의 평결이 잘못될 경우 파란버스회사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것이며, 안전운행을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종속 측정치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거우위의 결정규칙’, ‘주관적 확률 판단’, 및 ‘유죄 평결’을 측정하였고, 마지막에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조작점검하기 위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모의배심원이 피고(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무죄 평결을 한 후에, 스스로의 결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평결 오류 위험성을 느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제시된 시나리오에 의하면, 당신의 유·무죄 결정이 잘못될 경우에 파란버스회사가 받게 될 재산상의 손해와 이미지 손상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적다, 5 - 매우 크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결 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의 조작점검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잘 조작되었는지

즉,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거나 높게 조작된 조건별로 실제로 모의배심원들이 평결 오류 위험성을 낮거나 높게 지각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나리오 조건에 따른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높게 조작한 조건의 배심원들($M=3.90, SD=0.80$)이 낮게 조작한 조건의 배심원들($M=2.80, SD=1.13$)보다 평결 오류 위험성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여 ($t(58)=4.36, p < .001$),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확률 판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파란버스회사의 버스가 노트북을 파손했을 주관적 확률의 평균은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에서

표 3.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평결 결과(실험 2)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낮음(n=30)	높음(n=30)
주관적 확률(%)	68.33	72.67
유죄 평결(%)	90.00	56.67

68.33%($SD=18.72$), 높은 조건에서는 72.67%($SD=16.23$)로 나타났다. 두 조건 간에 주관적 확률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확률은 두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58)=.96, ns$).

유죄 평결 비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파란버스회사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모의배심원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의 경우 90%가 유죄로 결정하였으며,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높은 조건은 56.67%가 유죄로 결정하였다. 두 조건 간에 유무죄 평결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chi^2(1, N=60)=8.52, p < .01$), 평결 오류 위험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죄 평결을 현저히 적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 결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가적으로, 조건별로 주관적 확률과 유죄 평결 질문의 제시 순서에 따른

표 4.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에 조건에 따른 유무죄 평결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전 체	
	낮음		높음			
	N	%	N	%	N	%
유죄 평결	27	90.00	17	56.67	44	73.33
무죄 평결	3	10.00	13	43.33	16	26.67
전 체	30		30		60	

$\chi^2 = 8.52^{**}$

** $p < .01$

순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순서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논의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모의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사건을 일으켰을 확률을 높게 지각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주저하는지, 즉 웰스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의배심원들은 두 시나리오 조건 모두에서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타이어자국 믿음 조건보다 타이어자국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해 유죄 평결을 유의하게 더 적게 내린 것으로 나타나, 웰스효과가 반복검증되리라 예상했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실험 1의 결과를 같은 조건들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실험 1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보다 약간 높은 유죄평결 확률을 두 시나리오 조건 모두에서 보여주는 하였으나, 타이어자국 조건에서 유죄에 대한 높은 주관적 확률 지각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 서구와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

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웰스효과가 반복검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2에서는 웰스효과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설명을 제안하고 이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필자들은 배심원들이 잘못된 평결을 했을 때 발생할 위험성(risk)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잘못된 평결로 인해 피고가 받게 될 피해 또는 부정적인 결과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유죄의 주관적 확률을 높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을 주저하는 웰스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이라고 명명하였다. 실험 2의 결과에서, 모의배심원들은 피고인 파란버스회사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두 조건 모두에서 높은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지만,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의 경우 90%가 피고를 유죄로 결정하였으며,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높은 조건은 56.67%만이 피고를 유죄로 결정하여, 평결 오류 위험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의 모의배심원들이 파란버스회사에 대한 유죄 평결을 현저히 적게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가설 2가 지지되어,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설명이 웰스효과에 대한 적절한 설명임을 보여주었다.

비록 실험 2의 평결오류위험성 지각이 높은 조건에서 주관적 확률보다 유죄평결 비율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웰스효과가 나타난다는

표 5. 선행연구들과 실험 1 결과의 비교

	타이어자국조건			타이어자국-믿음 조건		
	Wells(1992)	Niedermeier 등(1999)	실험 1의 결과	Wells(1992)	Niedermeier 등(1999)	실험 1의 결과
주관적 확률(%)	60~70	73	74.67	60~70	75	73.57
유죄 평결(%)	10~20	30	40	60~70	60	78.57

것을 보여 주었지만,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에서는 오히려 주관적 확률보다도 높은 유죄평결 비율(90%)을 보여 주어 실험 결과의 해석에 약간의 제한점을 갖게 한다. 이 조건에서 유죄평결 비율이 90%로 급등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필자들이 실험 1의 실시 경험을 통해 실험 2의 절차에 작은 변형을 가했고, 이것이 요구특성으로 작용한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필자들은 실험 1에서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정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했는데, 피험자 손실이 예상보다 많아서(46명 중 17명이 정답을 맞지 못함에 따라 제외됨), 실험 2를 실시할 때 실시자가 참가자들과 함께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이 기록된 페이지를 보면서 이 규칙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했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해했다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증거우위의 결정규칙에 대한 강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유죄 평결 비율을 더 높이게 만드는 요구특성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실험 2의 시나리오는 타이어자국 조건 시나리오의 마지막에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조작하기 위한 새로운 문단이 추가되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추가된 문구는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량의 증가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본적인 타이어자국 조건의 사건관련 정보에 부가적으로 평결 오류 위험성이 어느 방향으로 조작되는지에 상관없이, 피해물품(노트북), 재정적인 손실 및 회사이미지의 타격 등을 언급함으로써 이 모든 정보가 모의배심원의 유죄평결 가능성을 더 높이는 추가적인 정보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를 실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설계와 관련된 제한점으로서, 본 연구의 두 실험을 통합하여 하나의 설계로 실시하였다면 타이어자국조건/타이어자국-민음조건 간의 조작과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조작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웰스효과와 이의 대안적 설명의 타당성 검증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우리나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반복검증되지 않은 웰스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실험 1은 웰스효과의 반복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게 되었고, 실험 2에서는 ‘평결오류 위험성지각’ 변인의 조작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하여 실험을 실시하려 했기 때문에 타이어자국 조건에만 제한하여 ‘평결오류위험성지각’ 변인의 조작효과를 살펴보게 되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을 같은 실험설계 내에서 다루어,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 등을 해석하는 것도 웰스효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미래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낸 웰스효과의 설명들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설명 외에도 또 다른 대안적인 설명들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확률을 제시한 틀이 달라서 웰스효과가 도출된 것은 아닌지 즉 웰스효과를 틀효과(*framing effect*)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미래의 좋은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배심원제에서는 공판에서의 변론이

중결되면 배심원들이 모여서 유·무죄에 관한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토의하는 평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의가 끝난 뒤에는 주로 만장일치로 최종평결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집단적인 평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갖는 개인적인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실 법정으로의 적용상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Wright, MacEachern, Stoffer, & MacDonald(1996)가 모의 배심원들이 결정을 집단으로 하거나 평결을 하기 위해 긴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도 웰스효과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적인 판단과 집단적 토의를 통한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추후에 우리 문화권에서의 실제 집단의사결정 상황에서도 웰스효과가 재검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법정 판단에서의 주관적 확률과 평결간의 불일치를 밝힌 이번 연구의 결과를 넘어서, 비법률적인 맥락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법정 의사결정 연구 영역에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enes-Raj와 Epstein(1994)의 연구는 비법률적인 맥락에서도 웰스효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만든 통에 빨간 콩과 하얀 콩을 담아 놓고 이 통에서 빨간 콩을 꺼내는 피험자에게 1달러를 보상했다. 참가자들은 10개의 콩 중에 1개가 빨간 콩으로 구성된 통과 100개의 콩 중에 9개가 빨간색 콩으로 구성된 통 중에

서 선택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보상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함으로써, 법률적인 맥락 이외의 상황에서도 웰스효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앞으로 비법률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기제 탐색 연구가 활성화되어, 법정 의사결정 연구에 줄 수 있는 유익한 영향을 기대해 본다.

넷째, Wells(1992)가 발견하고 Niedermeier 등(1999)이 명명한 웰스효과는 초기에 이 효과의 존재 여부와 몇 가지 설명기제가 확인된 이후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줄어든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웰스효과보다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들에 집중함으로써 웰스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웰스효과의 발견자인 Gary L. Wells는 웰스효과보다는 목격자의 기억(eyewitness memory)이나 목격자의 범인 확인(eyewitness identification)의 정확성이나 절차의 문제(예. lineup vs. photospread) 등에 연구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Niedermeier의 지도교수이자 공동연구자인 Norbert L. Kerr는 배심원의 법적용불가판단(jury nullification) 등의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웰스효과에 대한 추후의 연구들이 활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Wells(1992)가 제안한 민사사건 시나리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형사사건에서도 웰스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도 인용되었듯이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Hal Arkes와 그의 동료 및 제

자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웰스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예. Arkes 등, 2012)가 본 연구와 더불어 웰스효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다섯째, 민사재판의 특성상 유무죄의 판단으로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배상액을 결정하는 단계를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상액을 명시적으로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전과정에 걸쳐 웰스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달리 조작해 주었을 때, 유무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의 추정값이나 최종평결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새로운 연구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전까지 수행되지 않았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배심원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 의사결정의 연구들이 주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점차 대상사건이 민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분야의 실증적 연구의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가상적인 재판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59-84.

서울신문 (2011, 9, 27). 민사도 국민참여재판 도입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7001018>

연합뉴스 (2012, 9, 15). 춘천지법 네 번째 시민참여 민사재판...조정성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98667>

한국일보 (2012, 2, 1). ‘어린이집 여아 사망’ 민사재판에 첫 모의배심원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0118070821950.htm>

Arkes, H. R., Shoots-Reinhard, B., Mayes, R. S. (2012). Disjunction Between Probability and Verdict in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5(3), 276-294.

Denes-Raj, V., & Epstein, S. (1994). Conflict between intuitive and rational processing: When people behave against their better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19-829.

Kahneman, D., & Tversky, A. (1972). Subjective probability: A judgement of representativeness. *Cognitive Psychology*, 3, 430-454.

McCauliff, C. M. A. (1982). Burdens of proof: Degrees of belief, quanta of evidence, or constitutional guarantees? *Vanderbilt Law Review*, 35, 1293-1335.

Niedermeier, K. E., Kerr, N. L., & Messé, L. A. (1999). Jurors' use of naked statistical evidence: Exploring bases and implications of the Wells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533-542.

Saks, M. J., & Kidd, R. F. (1980).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and adjudication: Trial by heuristics. *Law and Society Review*, 15,

- 123-160.
- Sykes, D. L., & Johnson, J. T. (1999). Probabilistic evidence versus the representation of an event: The curious case of Mrs. Prob's do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199-212.
- Wells, G. L. (1992). Naked statistical evidence of liability: Is subjective probability enoug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39-752.
- Wright, E. F., MacEachern, L., Stoffer, E., & MacDonald, N. (1996).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naked statistical evidence of liabil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 677-688.

논문 투고일 : 2013. 03. 14

1차 심사일 : 2013. 05. 20

게재 확정일 : 2013. 05. 30

Identification of Wells Effect and Effects of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Dong-Heon Seok

Mi-Jin Kim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1) replicate the Wells effect(i.e., reluctance to rule against the defendant solely on the basis of probabilistic evidence) in Korea and 2) examine the validity of an alternative explanation(i.e., perception of risk of wrong verdict). In study 1(n=46), mock jurors in the tire-tracks condition were reluctant to rule against the defendant based on their perceived probability and this pattern was not resulted in the tire-tracks-belief condition. Therefore, the Wells effect was replicated in Korea. In study 2(n=70), we manipulated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risk of wrong verdict. That is, participants who were assigned in the high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were informed that if the defendant were found guilty, the defendant would get considerable damage both in finance and reputation of the company. Participants in the low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condition were informed that these damage would not be great.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Wells effect was pronounced in the high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condition. That is, participants were more reluctant to rule against the defendant when they perceive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 of wrong verdict as high.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ells effect, Verdict,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